

(가칭)승윤노블리안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람

■ 본 아파트(공동주택)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년 2월 25일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주택법」 제6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1항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 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9.02.25)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 (2018.0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2018.02.26.)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성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지역으로 청약 신청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및 분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을 포함하여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 시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처우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전용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전용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에서 공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주택법」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자,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1순위 청약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부적격 처리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8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yoon.co.kr)에 공개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동·호수 배정 후 미계약시 당첨자로 관리됨).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동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7호의 각목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과천시·성남시·광명시 / 하남시·고양시·구리시·안양시 동안구·남양주시·화성시(동탄2)·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과천시·성남시 분당구·광명시·하남시·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대구광역시 수성구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본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 불가안내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 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1순위 청약 가능)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 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의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시간 : 08:00~17:30)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685-456 남부타운 307호-309호에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 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의 경우 1년,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신청접수일	신청방법
1순위 해당지역	2019.03.04 (월)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1순위 기타지역	2019.03.05 (화)	

2순위	2019.03.06 (수)	- 스마트폰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2019.03.12 (화)	
계약체결일	2019.03.25 (월) ~ 2019.03.27 (수)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2018.05.28.부터 스마트폰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택과 - 645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280번지 외 2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지상15층 1개동, 총 98세대(일반공급 59세대)

▣ 입주시기 : 2020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사용승인 신청시 및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일반분양분)

(단위 : 면적-㎡,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타 입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합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19000162-01	54A	54.8420A	54.8420	18.5956	73.4376	43.8742	117.3118	29.60	-	4	4	-
	2019000162-02	54B	54.8420B	54.8420	18.5955	73.4375	43.8754	117.3129	29.61	-	1	1	-
	2019000162-03	54C	54.8420C	54.8420	18.5956	73.4376	43.8742	117.3118	29.61	-	1	1	-
	2019000162-04	58	58.1090	58.1090	19.7034	77.8124	46.4879	124.3003	31.35	-	40	40	6
	2019000162-05	59	59.2505	59.2505	20.0904	79.3409	47.4011	126.7420	31.98	-	13	13	-

▣ 공급대상 및 면적(조합분양분)

(단위 : 면적-㎡,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타 입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합계		특별공급	조합공급	합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조합	-	58	58.1090	58.1090	19.7034	77.8124	46.4879	124.3003	31.35	-	39	39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면적-㎡, 세대)

구분	타입	주택형	공급 세대수	층수	공급금액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자납)	잔금	
								2019/03/25	2019/04/20	2019/06/20	2019/08/20	2019/11/20	2020/01/20	2020/04/30	
민영 주택	54A	54.8420A	1	13	203,534,197	194,771,473	398,305,67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59,505,670
	54A	54.8420A	3	15	203,534,197	194,771,473	398,305,67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59,505,670
	54B	54.8420B	1	13	203,381,730	194,625,570	398,007,3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59,207,300
	54C	54.8420C	1	14	201,503,948	192,828,632	394,332,58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57,932,580
	58	58.1090	58.1090	6	1	182,667,247	174,802,903	357,470,15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43,270,150
		58.1090	58.1090	3	2	186,596,525	178,563,015	365,159,54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46,159,540
		58.1090	58.1090	3	3	188,487,307	180,372,393	368,859,7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48,059,700
		58.1090	58.1090	3	4	190,555,349	182,351,401	372,906,75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49,706,750

59	58.1090	3	5	193,480,155	185,150,285	378,630,44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51,830,440
	58.1090	3	6	195,370,937	186,959,663	382,330,6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53,130,600
	58.1090	16	7-12	197,438,979	188,938,671	386,377,65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54,777,650
	58.1090	3	12-13	193,480,155	185,150,285	378,630,44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51,830,440
	59.2505	1	3	186,951,047	178,902,273	365,853,32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46,853,320
	59.2505	1	4	188,871,374	180,739,926	369,611,3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48,211,300
	59.2505	1	5	192,032,522	183,764,978	375,797,5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50,797,500
	59.2505	1	6	193,775,589	185,433,001	379,208,59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151,808,590
	59.2505	7	7-13	195,873,173	187,440,277	383,313,45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53,513,450
	59.2505	1	14	192,032,522	183,764,978	375,797,5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50,797,500
	59.2505	1	15	189,905,393	181,729,427	371,634,82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49,034,82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람

■ 공통유의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필수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p>신청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2.25)현재 서울특별시내 연속 1년 이상(2018.0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입주자 저축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1년 이상)에 거주요건 충족 시 해당 1순위 청약 가능
<p>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급)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본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소수점 이하는 절상함)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속한자)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 속한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은 무주택자(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 속한자)와 1주택소유세대에 속한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기존 소유주택 처분을 서약한자에한함)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기존주택 미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함 ※ 민영주택 추첨제 제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자가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우선 공급 받은 후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음. 이 경우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 사실을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 완료하여야 함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중복 청약접수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 가능),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p>[모집공고일 전일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 : 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일부터 적용)에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 - 청약저축 변경 :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전용면적 85㎡초과의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청약부금으로 불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통해서 가능) <p>[모집공고일 당일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전입 :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 단, 1순위(해당)에서 180%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접수를 받지 아니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 :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p>[청약접수일 당일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 차액 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p>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재당첨 제한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바람(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신청시 “청약 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확인 바람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85m2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m2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배우자 및 배우자와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조건]에게 우선 공급함) ※ 단, 만60세 이상이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 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 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1년 이상 (2018.0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 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이상 ~ 2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20	
		2년이상 ~ 3년미만	6	10년이상 ~ 11년미만	22	
		3년이상 ~ 4년미만	8	11년이상 ~ 12년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	5	4명	25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 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0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p>※ 단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은 무주택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서 입주자를 선정 함.</p> <p>•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만65세 이상자,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 함</p>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p>•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8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p> <p>•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p> <p>•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p> <p>•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yoon.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함.</p>
유의사항	<p>•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유의사항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p> <p>•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p> <p>• 중복 청약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p> <p>-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이중당첨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구분	신청 대상사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방법
일반공급	1순위(당해)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2018.02.25.이전부터 계속 거주)	2019.03.04. (월)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신청(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www.ap2you.com) / 스마트폰(APT2you 앱)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19.03.05. (화) 08:00 ~ 17:30	
	2순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19.03.06. (수) 08:00 ~ 17:30	

※ 1순위 청약 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0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접수일에는 청약 불가(위반 시 부적격 처리)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KB국민은행 외 청약자)	KB 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	---------------------

[PC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PC청약시]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모바일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 청약신청」⇒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모바일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 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접수 가능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03.12. (화) • 확인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또는 APT2you앱에서 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 당첨 조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 계약체결 시 부적격 서류 검수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후 공지하여 부적격 서류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yoon.co.kr)에 공개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결제원(KB국민은행 외 청약자)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인터넷	2019.03.12.(화)~2019.03.21(목) (10일간)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K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KB부동산→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전화(ARS)	서비스 종료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9.03.12(화)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KB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KB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용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0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임.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03.25(월) ~ 2019.03.27(수) 3일간, 10:00~16:00	(가칭)승윤노블리안아파트 분양사무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685-456 남부타운 307호-309호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변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시 구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한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세대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불가함.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않은 경우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 대상에 해당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인터넷접수시 해당없음)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www.ap2you.com)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무주택서약서		무주택 입증서류(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약약서		기본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당첨자)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로 당첨시)
대리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 비치)
부적격 당첨통보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2.25. (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차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거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청약통장사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장수납 불가)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 예정입니다.(단, 당 아파트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분양자격을 제한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단지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방해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사무실에 제출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금 용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우리은행	1005-903-622126	철성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에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입금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 계약금 2차, 중도금 및 잔금납부계좌는 공급계약서에 세대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되고, 납부된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인 상기 계약금1차 납부계좌로 자동이체됨.
- ※ 상기 계좌 및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입금계좌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의 미납 또는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 및 보존등기일 2개월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부적격대상자통보일로부터 7일) 이후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일전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개별통보 합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0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사용승인 신청시 및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으로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전쟁,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별도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납부계좌

구분	발코니확장비	발코니확장비 납부일정	비고
		계약시	
전타입	10,000,000	10,000,000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903-622126	칠성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발코니확장공사비 계약금 납부 :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사무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02.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비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은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사양(유리, 창틀) 및 열림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시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 하였으므로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산출내역

대상 토지	해당면적(m ²)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기관	연락처
서울시 구로동 685-280 / 700-32 / 700-2	3,076 m ²	15,857,830,554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02-2105-6500
		15,727,443,903	(주)두요감정평가법인	02-525-1680

• 감정평가금액은 총원가x토지배분비율(%)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 토목 / 설비	소방 / 전기 / 통신	비고
회사명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주)유진씨엔이	부가세포함
감리금액	₩304,084,000원	₩67,1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창문 사양: PVC 미서기창 성능: 2등급이상 설치위치: 외벽창호	문 사양: 철재 단열문 성능: 2등급이상 설치위치: 세대현관, 테라스
고효율기자재	적용	가정용보일러(효율 91.2%)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각 실마다, 주방, 거실에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각 실 및 공용부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해당없음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거실, 침실 출입문쪽
절수설비	적용	모든 위생기구 및 수전류 절수형 사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내용

구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공동주택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13,997,600,000원	제01222019-101-0000600호

■ 분양자(매도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소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3.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5.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6.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7.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11.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2.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13.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제,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14.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와 협의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5.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9.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익없이 동의합니다.
21. 각 세대의 대피는 하향식피난구로 계획되어 있어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화재시 아래층으로 대피하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
22.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3.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24.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25.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6.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7.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8.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9.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0.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1.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합니다.
32.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3.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34.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높이는 2.95M이며 유효 천정고는 3.1M로 계획되었습니다.
35. 본 (가칭)승윤노블리안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에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축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동별 3층이하는 축벽, 주출입구측은 석재등 마감이며,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의 기준이 되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주택형에 따라 마감자재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 및 도어, 실외기실 그릴 및 도어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및 드레스룸 중문은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비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비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칸,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 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설비 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다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환풍기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특히 지상철)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랍니다.
- 일부 동의 경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철성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769-87-005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8, 204호(구로동, 철성아파트)
시공사	승윤종합건설(주)	109-81-69775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31길 27, 201호(신월동, 삼동아파트상가 2층)

■ 분양사무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685-456 남부타운 307호-309호

■ 홈 페이지 : www.syoon.co.kr

■ 분양 문의 : TEL.02-866-6777 FAX.02-866-677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